

# 감 사 결 과 보 고 서

「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 
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제2항 및  
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」  
제13조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가정2동 주민자치센터  
운영경비(기금) 및 주민자치회 자체회비를 감사한  
결과 집행목적 적합 및 증빙자료 관리 등이  
적절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2024. 7. 9.

감사: 박 옥 자 (인)

임 마 리 (인)

가정2동 주민자치회